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매우낮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6년 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6년 3월 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16.01.31)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펀드코드 : 16193]

투자위험등급 : 5등급(매우 낮은 수준)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하나UBS 신종MMF(S-29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02-3771-7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1좌단위 모집)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효력발생일	공시됩니다.	존속 기간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2016년 3월 4일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종류 A-U	종류 C	종류 W	종류 C-F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전환이 가능한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웹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 및 법에서 정한 기관투자자 또는 100억이상 매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없음			
보수 (연, %)	운용	0.0336%	0.0336%	0.0336%	0.0336%
	판매	0.0784%	0.0784%	0.0000%	0.0400%
	신탁업자	0.0100%	0.0100%	0.0100%	0.0100%
	일반사무	0.0100%	0.0100%	0.0100%	0.0100%
	기타	0.0030%	0.0049%	0.0000%	-
	피투자집합기구	-	-	-	-
	총보수비용	0.1350%	0.1369%	0.0536%	-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운용,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는 6개월 후급, 기타보수는 사유발생시 지급 · 수익자는 증권 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5.03.24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 : 익영업일 ·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p>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2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3영업일 지급 <p>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책임운영역	운영기간
전나영	2006년 6월 1일 ~ 현재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09/25~ 2015/09/24	2013/09/25~ 2014/09/24	2012/09/25~ 2013/09/24	2011/09/25~ 2012/09/24	2010/09/25~ 2011/09/24
하나UBS신종MMF(S-29호)	2000-03-25	2.06	2.65	2.76	3.47	3.16
비교지수	2000-03-25	1.80	2.49	2.68	3.19	2.85
C/AU	2013-05-13					
C/C	2000-03-25	2.06	2.65	2.76	3.47	3.16
C/W	2013-11-15					
(주 1) 비교지수 : Call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 일반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과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 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매우 낮은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의 위험분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위험 관리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15.4%(주민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위 : %)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엠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94%	1.6000%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A-U	1.0 이내	0.8374%	1.6400%	
하나 UBS 벨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3400%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0.5874%	0.9500%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0.0784%	0.150%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정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16193
A-U	AG638
C	AG637
W	AJ504
C-F	BB55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바. 가입대상 : 법인투자자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신종 MMF(S-29 호)	16193
A-U	AG638
C	AG637
C-F	BB55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0년 3월 25일	최초설정일
2004년 7월 5일	운용제한 변경
2005년 6월 7일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예외
2005년 7월 22일	수탁사 변경 (하나은행->우리은행)
2005년 11월 1일	운용제한 변경
2005년 11월 21일	환매 기준가격 예외조항 폐지
2006년 7월 1일	보수배분율 변경
2008년 7월 16일	보수변경
2009년 4월 29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종MMF S-29 호=>하나 UBS 신종 MMF(S-29 호)
2009년 7월 27일	법개정에 따른 국제 잔존만기 완화 등
2012년 5월 16일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2013년 2월 4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 펀드서비스 → 외환펀드 서비스)
2013년 3월 11일	종류명으로 전환 및 전환형 클래스 신설
2013년 4월 8일	엠브렐러 클래스 라인업 추가로 인한 변경 보수인하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2013년 4월 12일	엠브렐러 클래스(A-U) 전환 시 적용 Late Trading 단서조항 추가
2013년 5월 31일	- 자통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2013년 6월 19일	랩어카운트 전용 클래스 신설
2013년 11월 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4년 6월 18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조항 신설
2015년 1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및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2016.03.04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16.1.21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6.1.31 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전나영	1975	부장	9개	87,884억	- 경원대 중어중문학과 - 채권운용 10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나. 최근 3년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전나영	2006년 6월 1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법인투자자** 종류형, 전환형

구분	가입자격
운용개시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전환이 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렛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 C-F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 및 법에서 정한 기관투자자 또는 100 억이상 매입한 투자자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A-U	납입금액의 1.0%이내	없음	연0.1320%	연0.0784%
C	없음		연0.1320%	연0.0784%
W	없음		연0.0536%	연0.0000%
C-F	없음		연0.936%	연0.040%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위 : %)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94%	1.6000%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 호)[주식]	A-U	1.0 이내	0.8374%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3400%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0.5874%	0.9500%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0.0784%	0.15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공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단기 시장수익률에 연동된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
 : 단, 채무증권(법제 4 조제 3 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함.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에 한함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단기대출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집합투자증권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전자단기사채등	-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

<p>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신용등급</p>	<p>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상위 2 개 등급”) 이내이어야 함.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2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 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p>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계약서 제19조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동일종목 투자	<p>-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p>	

	<p>다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 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기타 투자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 매도를 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투자한도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전자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p>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국고,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리스크 최소화 합니다.
- 예금 및 우량 CD 에의 투자로 안정적 수익률확보 및 유동성확보에 Focus 를 둡니다.
- 비교지수 : **Call 금리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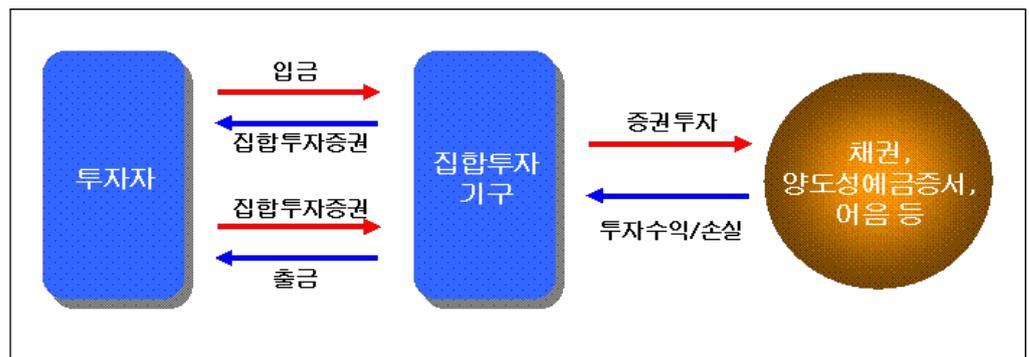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Call 금리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절을 통하여 유동성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에 주력합니다.

다.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양도성 예금증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금융투자신탁(MMF)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

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매우 낮은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가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현금관리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p>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기준가 가. 매입
 격 적용 기준 및 (1) 매입방법

**매입, 환매 방법적
용 예외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웹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 C-F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 및 법에서 정한 기관투자자 또는 100 억이상 매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용일 환매대금지급일

2)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

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매입/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MF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MF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전환 - 엠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엠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94	1.6000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	A-U	1.0 이내	0.8000	1.5480	

자신탁[주식]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A-U	1.0 이내	0.8374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3400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0.5874	0.9500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0.0784	0.1500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① 하나UBS 엠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하나UBS 엠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5시 이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한국거래소
15시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개장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②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5시 이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15시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개장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③**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7시 이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17시 경과후 ^{주1)}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영업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④**하나UBS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3시 이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13시 경과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개장일

(3) 전환시 유의사항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 4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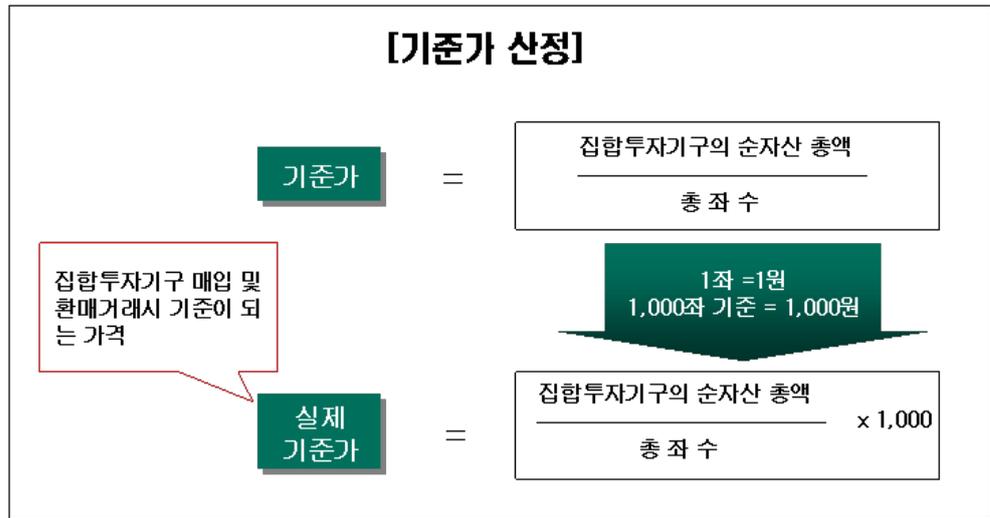
준 및 집합투자재

구분	내용
----	----

산의 평가

<p>기준가격 산정방법</p>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p>	<p>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기준가격 산정주기</p>	<p>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p>
<p>기준가격 공시시기</p>	<p>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p>
<p>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p>	<p>[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p>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주1)}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장부가와 시가와와의 과리 조정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주 1)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U	종류 C, W	종류 C-F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U	종류 C	종류 W	종류 C-F	
가입대상	법인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0336%	0.0336%	0.0336%	0.0336%	매 6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784%	0.0784%	0.0000%	0.0400%	
신탁업자보수	0.0100%	0.0100%	0.0100%	0.01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00%	0.0100%	0.0100%	0.0100%	
보수합계	0.1320%	0.1320%	0.0536%	0.0936%	
기타비용 ^{주 1)}	0.0030%	0.0049%	0.0000%	-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1350%	0.1369%	0.0536%	-	
증권 거래비용 ^{주 2)}	0.0000%	0.0030%	0.0536%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반기회계년도 **2015.3.24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반기회계년도 **2015.3.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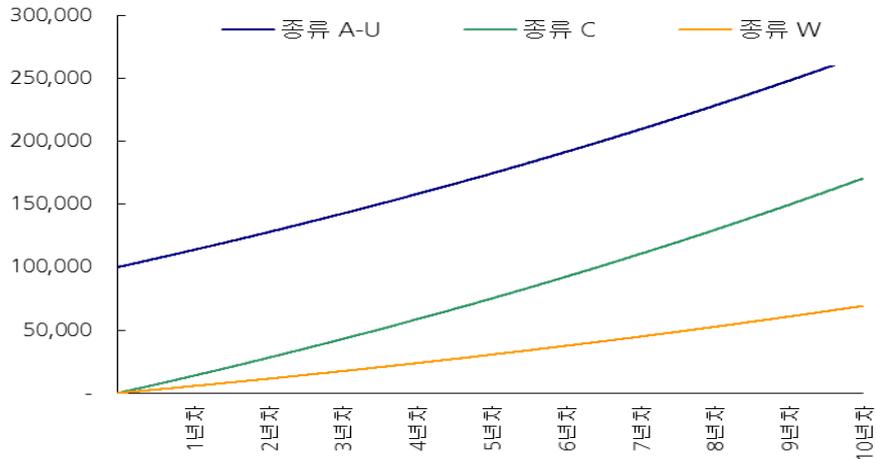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U	113,391	142,216	173,995	268,432
종류 C	13,528	42,648	74,752	170,157
종류 W	5,493	17,318	30,354	69,094
종류 C-F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된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한 일반기준가와, 과세 목적을 위한 과표기준가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 기(2013.03.25 - 2014.03.24)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15기(2014.03.25 - 2015.03.24)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16기(반기)(2015.03.25 - 2015.09.24)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6 기(반기)	제 15 기	제 14 기
	2015.09.24	2015.03.24	2014.03.24
운용자산	1,113,359,235,295	2,793,292,356,865	1,251,521,588,416
유가증권	101,907,958,340	451,882,402,929	274,319,079,401
현금 및 예치금	20,084,956,675	254,008,861,138	667,239
기타 운용자산	991,366,320,280	2,087,401,092,798	977,201,841,776
기타자산	2,082,975,466	8,630,634,562	4,585,283,740
자산총계	1,115,442,210,761	2,801,922,991,427	1,256,106,872,156
기타부채	6,949,346	70,864,152,993	34,204,278,677
부채총계	6,949,346	70,864,152,993	34,204,278,677
원본	1,104,300,387,655	2,731,058,838,434	1,221,902,593,479
이익조정금	11,134,873,760	0	0
자본총계	1,115,435,261,415	2,731,058,838,434	1,221,902,593,479
운용수익	22,957,919,912	34,697,021,356	20,163,567,155
이자수익	23,776,551,724	35,155,257,871	20,775,746,442
매매/평가차익(손)	-818,631,812	-458,236,515	-612,179,707
기타수익	0	0	420
운용비용	74,413,162	100,962,220	47,228,592
매매수수료	31,917,769	40,876,139	15,413,576
기타비용	42,495,393	60,086,081	31,815,016
당기순이익	22,883,506,750	34,596,059,136	20,116,338,563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6 기(반기)	제 15 기	제 14 기
	2015.09.24	2015.03.24	2014.03.24
운용자산	1,113,359,235,295	2,793,292,356,865	1,251,521,588,416
현금및예치금	20,084,956,675	254,008,861,138	667,239
현금및현금성자산	84,956,675	8,861,138	667,239
정기예금	20,000,000,000	254,000,000,000	0
대출채권	991,366,320,280	2,087,401,092,798	977,201,841,776
콜론	4,400,000,000	15,540,000,000	21,176,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600,000,000	328,300,000,000	0
매입어음	967,366,320,280	1,743,561,092,798	956,025,841,776
유가증권	101,907,958,340	451,882,402,929	274,319,079,401
채무증권	101,907,958,340	451,882,402,929	274,319,079,401
기타자산	2,082,975,466	8,630,634,562	4,585,283,740
미수이자	2,049,314,264	8,074,154,671	4,455,359,065
선급비용	33,661,202	556,479,891	129,924,675
자 산 총 계	1,115,442,210,761	2,801,922,991,427	1,256,106,872,156
기타부채	6,949,346	70,864,152,993	34,204,278,677
해지미지급금	0	0	12,087
수수료미지급금	5,387,106	11,453,651	8,951,945
기타미지급금	1,562,240	70,852,699,342	34,195,314,645
부 채 총 계	6,949,346	70,864,152,993	34,204,278,677
원 본	1,104,300,387,655	2,731,058,838,434	1,221,902,593,479
이익잉여금	11,134,873,760	0	0
자 본 총 계	1,115,435,261,415	2,731,058,838,434	1,221,902,593,479
부채 및 자본 총계	1,115,442,210,761	2,801,922,991,427	1,256,106,872,156

총좌수 신증 MMFS-29	1,104,300,387,655	2,731,058,838,434	1,221,902,593,479
C/AU	0	0	0
C/C	1,103,540,392,966	2,733,585,017,739	1,222,836,385,332
C/W	0	0	0
기준가격 신증 MMFS-29	1,010	1,000	1,028
C/AU	1,000	1,000	1,000
C/C	1,009	1,000	1,027
C/W	1,000	1,000	1,00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6 기(반기)	제 15 기	제 14 기
	2015.03.25 - 2015.09.24	2014.03.25 - 2015.03.24	2013.03.25 - 2014.03.24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22,957,919,912	34,697,021,356	20,163,567,155
투자수익	23,776,551,724	35,155,257,871	20,775,746,442
이자수익	23,776,551,724	35,155,257,871	20,775,746,44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10,436,845	49,739,065	17,101,405
채무증권매매차익	510,436,845	49,739,065	17,101,405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329,068,657	507,975,580	629,281,112
채무증권매매차손	1,329,068,657	507,975,580	629,281,112
기타운용수익	0	0	420
운 용 비 용	74,413,162	100,962,220	47,228,592
매매수수료	31,917,769	40,876,139	15,413,576
이자비용	11,629,035	19,031,631	6,766,866
기타운용비용	30,866,358	41,054,450	25,048,15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운용펀드	22,883,506,750	34,596,059,136	20,116,338,563
C/AU	0	0	343,401
C/C	21,349,930,160	32,740,586,586	19,138,295,515
C/W	0	0	20,394
좌당순이익(또는	10	25	28

좌당순손실), 운용펀드			
C/AU	0	0	22
C/C	9	24	27
C/W	0	0	10

2.연도별 실적 및 판매현황

하나UBS신종MMF(S-29호)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25~2014/03/24	241,075	241,075	7,774,830	7,920,900	6,794,002	6,925,994	1,221,903	1,256,097	
2014/03/25~2015/03/24	1,221,903	1,221,903	11,317,875	11,496,612	9,808,719	9,951,203	2,731,059	2,801,908	
2015/03/25~2015/09/24	2,731,059	2,731,059	7,891,443	7,923,058	9,518,202	9,561,565	1,104,300	1,115,435	

가. 종류형펀드

하나UBS신종MMF(S-29호)ClassAU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5/13~2014/03/24	50	50	105	105	105	105	0	0	
2014/03/25~2015/03/24	0	0	0	0	0	0	0	0	
2015/03/25~2015/09/24	0	0	0	0	0	0	0	0	

하나UBS신종MMF(S-29호)ClassC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25~2014/03/24	241,097	241,097	7,766,587	7,905,610	6,792,230	6,917,853	1,222,836	1,255,374	
2014/03/25~2015/03/24	1,222,836	1,222,836	11,260,299	11,430,139	9,781,829	9,917,228	2,733,585	2,800,766	
2015/03/25~2015/09/24	2,733,585	2,733,585	7,756,821	7,786,372	9,452,703	9,493,221	1,103,540	1,113,923	

하나UBS신종MMF(S-29호)ClassW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1/15~2014/03/24	56	56	56	56	56	56	0	0	
2014/03/25~2015/03/24	0	0	0	0	0	0	0	0	
2015/03/25~2015/09/24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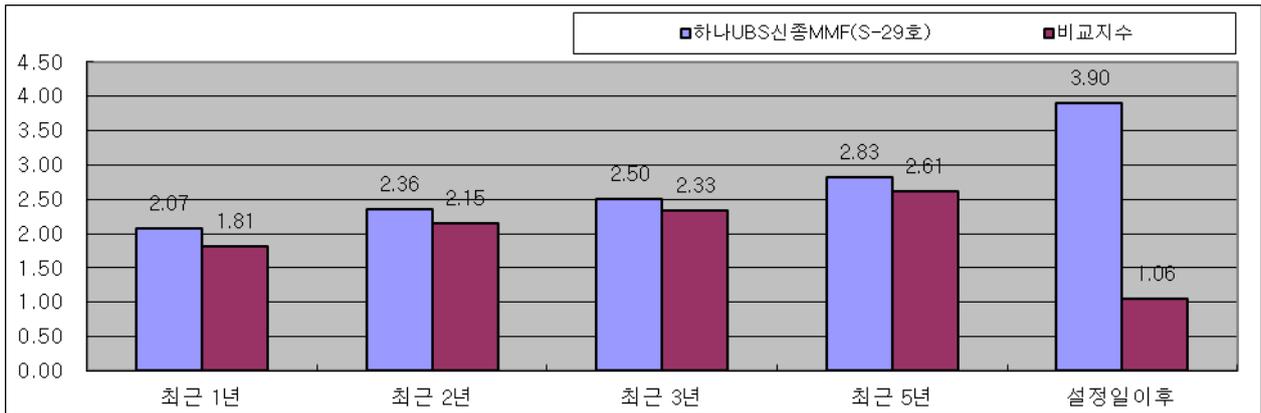
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비교지수 : Call 금리X 100%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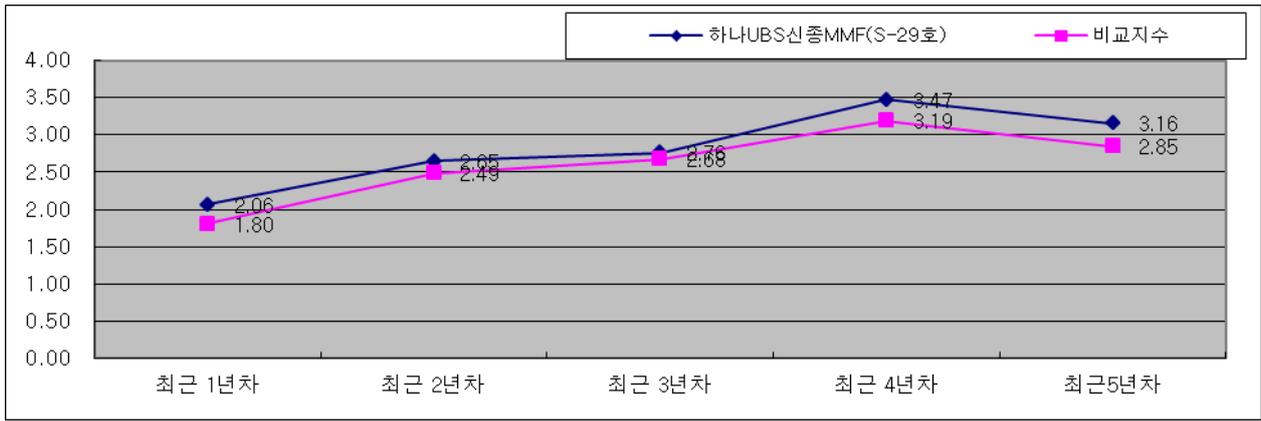
(기준일 : 2015 9 월 24 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4/09/25~ 2015/09/24	2013/09/25~ 2015/09/24	2012/09/25~ 2015/09/24	2010/09/25~ 2015/09/24	(%)
하나UBS신종MMF(S-29호)	2000-03-25	2.07	2.36	2.50	2.83	3.90
비교지수	2000-03-25	1.81	2.15	2.33	2.61	1.06
C/AU	2013-05-13					
C/C	2000-03-25	2.07	2.36	2.50	2.83	3.90
C/W	2013-11-15					
(주 1) 비교지수 : Call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15 년 9 월 24 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09/25~ 2015/09/24	2013/09/25~ 2014/09/24	2012/09/25~ 2013/09/24	2011/09/25~ 2012/09/24	2010/09/25~ 2011/09/24
하나UBS신종MMF(S-29호)	2000-03-25	2.06	2.65	2.76	3.47	3.16
비교지수	2000-03-25	1.80	2.49	2.68	3.19	2.85
C/AU	2013-05-13					
C/C	2000-03-25	2.06	2.65	2.76	3.47	3.16
C/W	2013-11-15					

(주 1) 비교지수 : Call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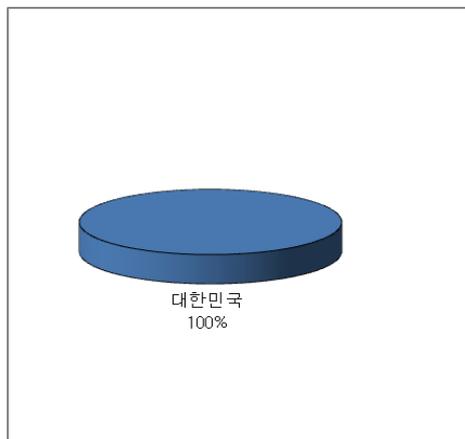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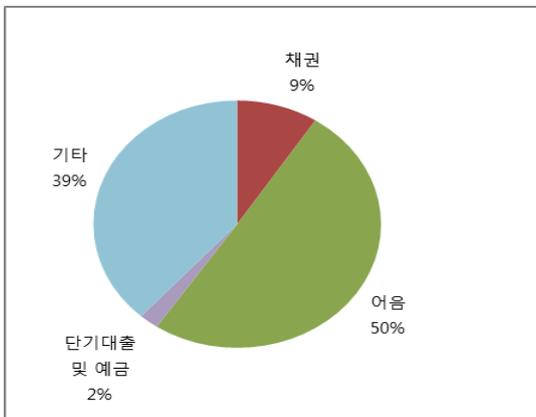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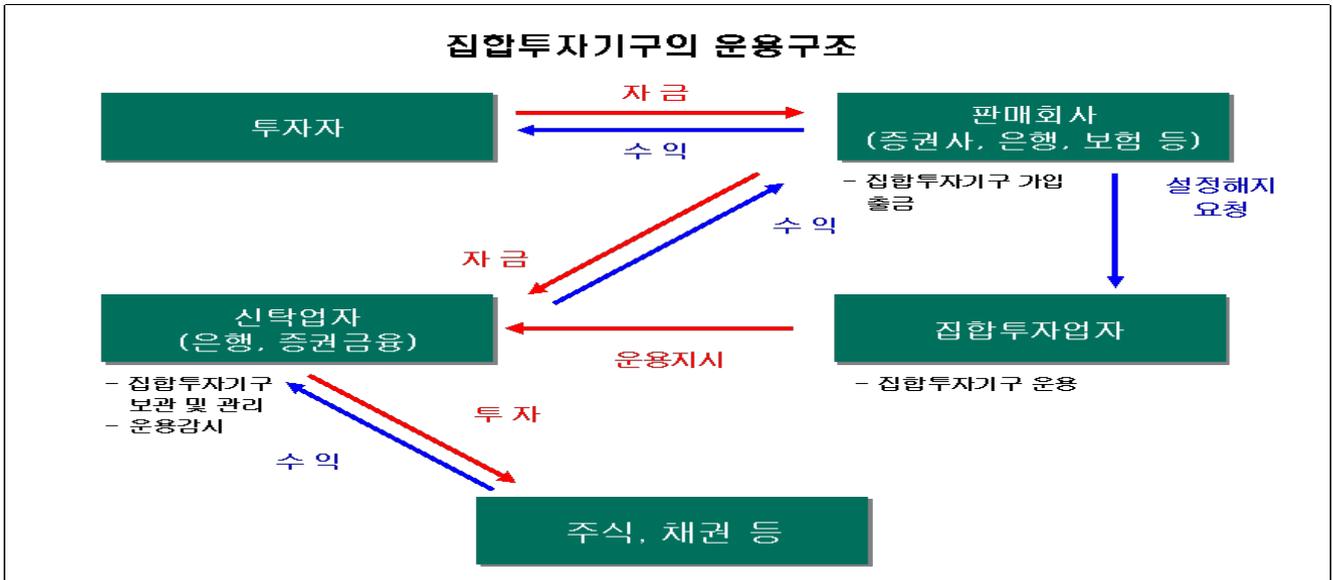
(2015.9.24. 기준 /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102,055	561,103	0	0	0	0	0	0	24,502	427,783	1,115,442
	(0.00)	(9.15)	(50.30)	(0.00)	(0.00)	(0.00)	(0.00)	(0.00)	(0.00)	(2.20)	(38.35)	(100.00)
자산합계	0	102,055	561,103	0	0	0	0	0	0	24,502	427,783	1,115,442
	(0.00)	(9.15)	(50.30)	(0.00)	(0.00)	(0.00)	(0.00)	(0.00)	(0.00)	(2.20)	(38.35)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02-3771-7800, www.ubs-hana.com)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금융투자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4.12.31	'13.12.31	항 목	'14.12.31	'13.12.31
현금및예치금	61,356	58,625	영업수익	36,031	29,226
유가증권및대출채권	1,893	1,976	영업비용	20,035	14,522
유형자산및기타자산	11,830	11,489	영업이익	15,996	14,704
자산총계	75,079	72,090	영업외수익	15	14
기타부채등	5,099	4,333	영업외비용	142	294
부채총계	5,099	4,333	경상이익	15,869	14,424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5	409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24,545	22,348	법인세	3,572	3,285
자본총계	69,980	67,757	당기순이익	12,297	11,139

라. 운용자산규모(2016년 1월 31일 기준 / 단위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총 계
34,251	14,488	53,160	115,423	9,222	1,803	4,174	5,261	237,783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T : 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 (Tel : 6714-4615)
홈페이지	www.kebis.co.kr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억원
NICE 피앤아이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02)398-3900 -http://www.nicepni.com/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억원
에프앤자산평가	(110-7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 http://www.fnpricing.com/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자본금: 50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금융위원회의 “소규모 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 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정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이후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p>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p>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

	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